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05호, 2025. 3. 18. 공포, 2025. 9. 19. 시행)됨에 따라, 대체복무요원이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및 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청 기준 및 처리 절차 구체화(안 제36조의2)

대체복무요원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)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.

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(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대체복무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대체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.

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무중단 결정 또는 복무중단을 취소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6조의2(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)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.</u> <u>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(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 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 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 한 뒤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을</u>

거쳐 대체복무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대체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.

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무중단 결정 또는 복무중단을 취소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39
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2641